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권고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완 도 군
(세무회계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수신 : 완도군수

2024회계연도 완도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5년 3월 20일 ~ 4월 8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조 인 호
- 검 사 위 원 : 이 성 용
- 검 사 위 원 : 조 승 호
- 검 사 위 원 : 황 창 령
- 검 사 위 원 : 박 희 선
- 검 사 위 원 : 박 기 제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 목 차 】

○ 결산검사 의견서

I. 결산검사 경과	2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5
1. 완도군 재정의 개황	6
2. 세입·세출 결산	8
가. 총괄	
나. 일반회계	
(1) 세입	
(2) 세출	
다. 특별회계	
(1) 세입	
(2) 세출	
라. 명시·사고·계속비이월	
3. 기금의 결산	17
4. 재무제표의 결산	18
5. 성과보고서	20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22
가. 채권	
나. 채무	
다. 공유재산	
라. 물품	
III. 개선 및 권고사항	2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완도군수 귀하

2025년 4월 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완도군의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5년 3월 20일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4회계연도 완도군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완도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부속서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완도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별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 기금, 채권·채무, 재산 및 물품은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대표검사위원 조인호 (인)

검사위원 이성용 (인)

검사위원 조승호 (인)

검사위원 황창령 (인)

검사위원 박희선 (인)

검사위원 박기제 (인)

I. 결산검사 경과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5. 3. 20. ~ 4. 8.(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조인호	• 세입·세출 결산 검사 총괄	
검사위원	이성용	• 재무제표, 첨부서류 검사 • 분식결산 검사 • 보조금 집행 결산검사	
검사위원	조승호	• 출자·출연기관 검사 • 기금 결산 검사 • 재정연건, 재정건전성 검사	
검사위원	황창령	• 일반·특별회계 세입 결산검사 • 부채·채권·채무 검사 • 금고검사	
검사위원	박희선	• 계약관련(수의계약) 결산검사 • 예산편성 및 성과보고서 검사	
검사위원	박기제	• 이용·전용·이체 검사 • 공유재산·물품관리 검사	
공통사항		•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산검사 내용	비고
결산검사	'25. 3. 20. ~ '25. 4. 6.	• 계산의 과오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심사 •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심사 • 성인지결산서, 기금결산서 등 첨부서류 심사	
의견서 작성	'25. 4. 7. ~ '25. 4. 8.	• 위원 간 토의 및 의견서 작성	

4. 결산검사 진행

가. 결산총괄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지방금고의 계산증명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보고서 일치 여부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사용명세서상의 예비비의 과목별 집행내용의 일치 여부
- 전년도 결산심의 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촉구사항의 이행 여부

나. 세입결산

- 세입결산 사항 및 각 내역별 세입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징수현황
- 각종 기금관리의 효율성
- 예산액 추계의 적정성 등

다. 세출결산

- 세출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예산 운용의 효율성
-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내역
- 각종 이월예산의 타당성
- 민간보조금의 적정지원 및 집행여부
- 각종 공사집행의 타당성
- 기금관리 및 세입세출외현금관리의 타당성 등

라. 기타

- 채권, 채무관리의 적정성
- 공유재산 증감 및 관리의 적정성
- 각종 지출 증빙서류의 이행사항
- 비효율적인 제도 및 절차 등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완도군 재정의 개황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회계	세입	712,671,433	727,018,998	852,060,581	839,152,777	825,348,790
	세출	579,115,360	592,642,419	681,647,523	647,784,222	672,416,700
	결산상 잉여금	133,556,073	134,376,579	170,413,058	191,368,555	152,932,090
특별회계	세입	40,429,992	34,583,881	36,953,672	33,694,834	28,666,712
	세출	23,461,870	24,038,484	22,401,469	26,324,912	26,123,746
	결산상 잉여금	16,968,122	10,545,397	14,552,203	7,369,922	2,542,965
기 금	수입	48,087,835	13,007,320	51,670,483	76,832,417	44,709,780
	지출	35,619,936	7,952,803	16,327,763	40,056,815	272,463
	결산상 잉여금	12,467,899	17,522,416	35,342,720	36,775,602	44,437,316
총 계	세입(수입)	801,189,260	774,610,199	940,684,736	949,680,028	898,725,282
	세출(지출)	638,197,166	624,633,706	720,376,755	714,165,949	698,812,909
	결산상 잉여금	162,992,094	162,444,392	220,307,981	235,514,079	199,912,371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에 비해 세입의 증가율이 약 0.1% 높고, 잉여금의 경우 평균 3.4%로 매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4년	2,024,136,066	42,085,134	1,982,025,932	629,905,597	651,001,248	21,095,651	
2023년	2,065,826,810	33,182,698	2,032,644,112	640,488,046	607,961,802	32,526,244	
증감	(41,690,744)	8,902,436	(50,593,180)	(10,582,449)	43,039,446	△53,621,895	

- 2024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50,593,180천원 감소하여 재정상태는 2.5% 감소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53,621,895천원 감소함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 지난 3년간 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

구 분	2022		2023		2024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066,708,774	100	2,065,826,810	100	2,024,136,066	100
유동자산 ¹⁾	265,218,745	12.83	246,881,955	11.95	212,884,540	10.52
투자자산 ²⁾	5,325,556	0.26	5,234,146	0.25	5,272,856	0.26
일반유형자산 ³⁾	124,921,891	6.04	129,511,171	6.27	128,369,220	6.34
주민편의시설 ⁴⁾	313,737,426	15.18	339,185,918	16.42	340,280,409	16.81
사회기반시설 ⁵⁾	1,356,853,246	65.65	1,344,184,442	65.07	1,335,697,586	65.99
기타비유동자산 ⁶⁾	651,910	0.04	829,179	0.04	1,631,454	0.08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 2)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 3)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 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 5)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 6)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1,982,050,932천원으로 전년 대비 50,593,180천원(2.5%) 감소
- 총자산은 2,024,136,066천원으로 전년 대비 41,690,744천원 감소함.

2.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 =A-B)
합 계	860,266,381	854,015,502	698,540,446	155,475,056
일 반 회 계	831,688,403	825,348,790	672,416,700	152,932,090
특 별 회 계	28,577,977	28,666,712	26,123,746	2,542,965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0	30,450,485	9,020,874	84,118,759	17,923,892	13,961,045
일 반 회 계	0	29,605,749	9,020,874	82,807,381	17,707,502	13,790,582
특 별 회 계	0	844,735	0	1,311,377	216,389	170,462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54,015,502천원으로 예산현액 860,266,381천원보다 6,250,879천원이 덜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약 82%인 698,540,446천원으로 차인잔액은 155,475,056천원이며,
- 이 중 명시이월비 30,450,485천원, 사고이월비 9,020,874천원, 계속비 84,118,759천원, 보조금 반납금 17,923,89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961,045천원이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나. 일반회계

(1)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결산액	678,371,222	830,083,706	825,348,790	1,150,406	3,584,510
결산확인액	678,371,222	830,083,706	825,348,790	1,150,406	3,584,510
차액	0	0	0	0	0

- 수납액 825,348,790천원은 예산현액의 122%로서 146,977,568천원이 초과수납 되었다.
- 주요 초과된 세입요인은 예산대비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등의 수령액 증가 등으로 확인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825,348,790	825,348,790	0

- 본 회계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액	예산 대비 징수 결정액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징수 결정액 대비 결손 처분액
2024	678,371,222	830,083,705	825,348,790	1,150,405	122	99.4	0.14
2023	827,154,721	844,071,044	839,152,777	420,896	102	99.4	0.05
증감	▽148,783,498	▽13,987,338	▽13,803,986	△729,510	-	-	-

- 수납액은 전년도 839,152,777천원 보다 13,803,986천원이 감소한 825,348,790천원이며,
-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420,896천원 보다 729,510천원이 증가한 1,150,405천원이고,
-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는 행방불명 206,708천원, 무재산 852,618천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1,793천원, 기타 27,606천원 등임.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678,371,222	830,083,706	825,348,790	1,150,406	3,584,510	
지방세	소 계	26,915,299	27,495,110	26,229,540	276,436	989,134
	주민세	669,793	660,099	622,810	10,170	27,119
	재산세	2,874,683	3,102,429	2,996,563	25,519	80,347
	자동차세	5,861,939	6,002,707	5,588,490	13,336	400,881
	담배소비세	4,500,000	4,542,213	4,542,224	-	-
	지방소비세	7,285,369	7,237,577	7,237,577	-	-
	지방소득세	5,033,515	4,843,433	4,678,449	21,545	143,439
	지난연도수입	690,000	1,106,651	563,428	205,865	337,358
세외 수입	소 계	19,887,550	25,844,579	22,375,234	873,970	2,595,375
	재산임대수입	140,559	278,761	230,447	-	48,313
	사용료수입	2,520,016	3,235,292	3,189,872	-	45,420
	수수료수입	2,214,376	2,818,405	2,816,184	-	2,222
	사업수입	4,979	34,216	34,216	-	-
	징수교부금	379,091	418,249	418,249	-	-
	이자수입	5,445,434	5,517,030	5,512,433	-	4,597
	재산매각수입	249,542	553,599	553,599	-	-
	보조금반환수입	1,706,697	1,633,600	1,627,586	-	6,014
	기타수입	6,048,397	7,251,471	6,812,905	917	437,649
	지난연도수입	112,256	3,336,474	639,716	872,331	1,824,427
	과징금	207,800	5,700	5,700	-	-
	이행강제금	54,000	192,880	68,664	-	124,216
	변상금	25,000	19,585	13,893	-	5,692
	과태료	166,698	281,755	195,578	673	85,504
	환수금	103	73,513	65,572	-	7,942
	부담금	612,552	194,049	190,620	49	3,380
범칙금	-	-	-	-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지방교부세	293,194,000	286,322,476	286,322,476	-	-
조정교부금등	15,031,000	15,952,452	15,952,452	-	-
보조금	274,015,538	274,993,876	274,993,876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1,327,885	191,475,213	191,475,213	-	-

- 지난해 전체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3.18%(26,220,540천원), 세외수입이 2.71%(22,375,234천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는 34.69%인 286,322,476천원, 조정교부금등은 1.93%인 15,952,452천원, 보조금은 33.32%인 274,993,876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3.20%인 191,475,213천원이 수납되었다.

(2)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결산액	677,736,292	831,688,404	672,416,700	121,698,658	9,791,856	27,781,188
결산확인액	677,736,292	831,688,404	672,416,700	121,698,658	9,791,856	27,781,188
차액	0	0	0	0	0	0

- 지난해 예산액은 677,736,292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53,952,11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31,688,404천원이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에 해당하는 672,416,700천원이었다.
- 전체이월액은 121,698,658천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29,605,749천원, 사고이월액은 9,020,874천원, 계속비이월액은 83,072,034천원이었다. 주된 이월액 발생사유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었다.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에 해당되는 27,781,188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예산전용은 44건 958,011원으로 우리군 장보고 이순신 해상영웅 관련 사업 추진 및 김의날 행사 개최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 예비비 사용액은 1,291,755천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대처와 호우피해 복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분 사용되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72,416,700	672,416,700	0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음.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3 회계연도 지출액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금 액	비 율
합 계	647,784,222	831,688,404	672,416,700	80.85%	24,632,478	3.66%
일반공공행정	47,315,286	80,446,686	64,227,476	79.84%	16,912,190	26.33%
공공질서및안전	10,839,771	11,995,752	9,218,582	76.85%	▽1,621,189	▽17.59%
교 육	5,209,424	4,320,752	4,264,049	98.69%	▽945,375	▽22.17%
문화및관광	37,659,612	67,979,634	43,086,392	63.38%	5,426,780	12.60%
환경보호	44,362,787	59,081,447	50,252,646	85.06%	5,889,859	11.72%
사회복지	128,219,789	148,162,309	139,279,875	94%	11,060,086	7.94%
보 건	14,466,804	19,946,044	13,954,436	69.96%	▽512,368	▽3.67%
농림해양수산	188,945,917	230,224,300	181,750,733	78.95%	▽7,195,184	▽3.96%
산업·중소기업	10,295,028	13,816,119	10,998,190	79.60%	703,162	6.39%
교통및물류	27,365,180	28,496,436	25,616,141	89.89%	▽1,749,039	▽6.83%
국토및지역개발	51,832,984	81,909,070	46,591,057	56.88%	▽5,241,927	▽11.25%
예비비 및 기타	81,271,640	85,309,855	83,177,122	97.50%	1,905,482	2.29%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181,750,733천원, 사회복지 139,279,875천원, 예비비 및 기타 83,177,122천원, 일반공공행정 64,227,476천원, 환경보호 50,252,646천원 순이다.
- 전년대비 지출액이 가장 높게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16,912,190천원이며, 전년대비 26.33%가 증가하였다.

다. 특별회계

(1)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특별회계 합계	28,609,722	29,030,318	28,666,712	-	363,60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857,246	27,237,587	26,873,981	-	363,606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112,118	119,416	119,416	-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132,826	66,459	66,459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31,135	939,317	939,317	-	-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524,397	615,539	615,539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000	52,000	52,000	-	-
결산확인액	28,609,722	29,030,318	28,666,712	-	363,606
차액	0	0	0	0	0

- 수납액은 28,666,712천원으로 예산현액 28,609,722천원의 100.2%를 수납하였으며,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7%이고,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3,606천원이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8,666,712	28,666,712	0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2)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특별회계 합계	21,874,661	28,577,978	26,123,746	2,156,112	216,390	305,91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88,598	26,794,795	24,660,117	2,009,326	383	124,969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112,118	112,118	3,240	-	-	108,87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66,413	66,413	66,413	-	-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31,135	931,135	879,660	-	216,007	59,656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특별회계	524,397	621,517	462,316	146,786	-	12,41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000	52,000	52,000	-	-	-
결산확인액	21,874,661	28,577,978	26,123,746	2,156,112	216,390	305,917
차액	0	0	0	0	0	0

- 예산액은 21,874,661천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6,703,317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8,577,978천원이었고, 예산의 전용 1건 40,244천원이며, 이용·이체·예비비의 사용은 없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41%에 해당하는 26,123,746천원이며, 이월액은 2,156,112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844,735천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1,311,377천원이다.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7%에 해당되는 305,917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 등의 사유였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6,123,746	26,123,746	0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 본 연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는 다음과 같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결산>

(단위 : 천원)

회계구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비 고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합 계	311	123,590,118	142	30,450,485	37	9,020,874	132	84,118,759	
일반회계	301	121,434,004	135	29,605,749	37	9,020,874	129	82,807,38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	2,009,325	5	697,948	-	-	3	1,311,377	
농공단지 특별회계	2	146,787	2	146,787	-	-	-	-	

- 검사결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35건 29,605,749천원, 사고이월은 37건 9,020,874천원, 계속비는 129건 82,807,381천원임이 확인되었고,
- 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은 5건 697,948천원, 계속비 3건 1,311,377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 농공단지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건 146,787천원으로 확인되었다.

3. 기금의 결산

○ 2024회계연도 완도군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36,775,602	7,661,713	7,934,178	272,464	44,437,316
옥외광고정비기금	113,250	97,674	197,484	99,810	210,924
식품진흥기금	104,926	6,510	16,010	9,500	111,436
재난관리기금	1,382,199	220,993	342,488	121,494	1,603,193
생활폐기물처리 시설기금	19,868,233	566,142	566,142		20,434,37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계정)	6,199,396	5,495,948	5,495,948		11,685,344
청사신축기금	8,588,591	408,374	408,374		8,996,965
고향사랑기금	519,007	866,072	907,732	41,660	1,385,079

○ 지난해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36,775,602천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934,178천원을 더하고 당해사용액 272,464천원을 제외한 44,437,316천원이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30,792,018	12,467,899	24,622,416	67,464,988	36,775,602	4.5%
당해연도 조성액	17,295,817	13,007,320	51,670,483	9,367,428	7,934,178	▽17.7%
당해연도 사용액	35,619,936	7,952,803	16,327,763	40,056,815	272,464	▽70.4%
당해연도말 조성액	12,467,899	17,522,416	59,965,136	36,775,602	44,437,316	37.4%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당해연도 조성액이 평균 ▽17.7% 감소하였으며, 사용액 또한 감소하였다.

○ 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4.5% 증가하였다.

4. 재무제표의 결산

○ 2024회계연도 완도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다.

<재 정 상 태 표>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065,826,810	2,024,136,066	▽41,690,744	▽2.02%
Ⅰ. 유동자산	246,881,955	212,884,540	▽33,997,415	▽13.77%
Ⅱ. 투자자산	5,234,146	5,272,856	38,710	0.74%
Ⅲ. 일반유형자산	129,511,171	128,369,220	▽1,141,951	▽0.88%
Ⅳ. 주민편의시설	339,185,918	340,280,409	1,094,491	0.32%
Ⅴ. 사회기반시설	1,344,184,442	1,335,697,586	▽8,486,856	▽0.63%
Ⅵ. 기타비유동자산	829,179	1,631,454	802,275	96.76%
부 채	33,182,698	42,085,134	8,902,436	26.83%
Ⅰ. 유동부채	13,592,551	25,171,156	11,578,605	85.18%
Ⅱ. 장기채입부채	0	0	0	0
Ⅲ. 기타비유동부채	19,590,147	16,913,978	▽2,676,169	▽13.66%
순자산	2,032,644,112	1,982,050,932	▽50,593,180	▽2.49%
Ⅰ. 고정순자산	1,806,803,297	1,799,604,382	▽7,198,915	▽0.40%
Ⅱ. 특정순자산	36,930,403	44,707,472	7,777,069	21.06%
Ⅲ. 일반순자산	188,910,413	137,739,079	▽51,171,334	▽27.09%

- 지난해 말 자산은 2,024,136,066천원으로 전년도 2,065,826,810천원 보다 41,690,744천원 감소하였다.
- 투자자산, 특정순자산, 주민편의시설 증가 및 기타유동부채 감소는 자산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유동부채 증가와 고정·일반 순자산 감소는 자산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재 정 운 영 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4					2023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I.사업순원가	536,721,433	266,800,421	269,921,012	0	269,921,012	492,701,524	241,643,713	251,057,811	0	251,057,811
II.관리운영비	0	0	102,707,622	(16,486,385)	86,221,238	0	0	147,310,262	(54,982,971)	92,327,291
III.비배분비용	0	0	28,058,578	0	28,058,578	0	0	22,932,988	0	22,932,988
IV.비배분수익	0	0	23,275,146	0	23,275,146	0	0	17,605,492	0	17,605,492
V.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0	0	377,412,066	(16,486,385)	360,925,681	0	0	403,695,569	(54,982,971)	348,712,598
VI.일반수익	0	0	356,316,415	(16,486,385)	339,830,030	0	0	436,221,813	(54,982,971)	381,238,842
VII재정운영결과 (V-VI)	0	0	21,095,651	0	21,095,651	0	0	(32,526,244)	0	(32,526,244)

※ 재정운영결과(VII=V-VI)가 괄호()로 표시되면 흑자임

-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4회계연도 완도군의 사업순원가는 269,921,012천원이고, 관리운영비 102,707,622천원, 비배분비용 28,058,578천원, 비배분수익 23,275,146천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377,412,066천원이다.
-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56,316,415천원을 차감한 2024회계연도 완도군의 재정운영결과는 21,095,651천원이다.

5. 성과보고서

- 완도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2024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완도군은 본 회계연도의 '미래완도', '성장완도', '복지완도', '감동완도', '청정완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25개)-정책사업목표(133개)-단위사업(26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3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6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달성 지표수 (B)	미달성 지표수	달성률 (B/A)*100
계	25	133	243	208	35	77.6%
기 획 예 산 실	1	2	7	6	1	85.7%
인구일자리정책실	1	10	17	12	5	70.6%
해양치유담당관	1	3	9	5	4	55.6%
행 정 지 원 과	1	2	7	7	0	100.0%
세 무 회 계 과	1	3	5	5	0	100.0%
민 원 봉 사 과	1	4	8	6	2	75.0%
주 민 복 지 과	1	10	21	18	3	85.7%
가 족 행 복 과	1	5	10	10	0	100.0%
경 제 교 통 과	1	7	9	9	0	100.0%
관 광 과	1	4	8	8	0	100.0%
문 화 예 술 과	1	5	10	9	1	90.0%
체 육 진 흥 과	1	2	4	4	0	100.0%
농 업 축 산 과	1	3	10	6	4	60.0%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달성 지표수 (B)	미달성 지표수	달성률 (B/A)*100
해 양 정 책 과	1	8	24	19	5	79.2%
수 산 경 영 과	1	4	9	7	2	77.8%
산 림 휴 양 과	1	5	8	7	1	87.5%
환 경 수 질 관 리 과	1	7	14	14	0	100.0%
지 역 개 발 과	1	3	9	9	0	100.0%
건 설 과	1	7	11	11	0	100.0%
안 전 총 괄 과	1	5	11	11	0	100.0%
기 술 담 당 관	1	6	13	11	2	84.6%
보 건 행 정 과	1	2	4	3	1	75.0%
건 강 증 진 과	1	2	7	6	1	85.7%
시 설 관 리 사 업 소	1	4	6	3	3	50.0%
의 회 사 무 과	1	2	2	2	0	100.0%

○ 완도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전체 243개 지표 중 208개의 지표가 초과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7.6%이다.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가. 채권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4,091,244	0	61,290	4,029,954
일반회계	2,238,882	0	61,290	2,177,592
특별회계	1,852,362	0	0	1,852,362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29,954천원으로 확인됨.

나. 채무

○ 검사결과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공유재산

○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905,320,351	143,842,415	55,895,607	993,267,159	
행정 재산	소계	856,038,120	130,405,910	54,401,199	932,042,831
	공용재산	229,998,857	75,327,403	20,857,176	284,469,083
	공공용재산	625,006,683	54,989,471	33,483,545	646,512,609
	보존용재산	1,032,580	89,035	60,477	1,061,138
일반재산	49,282,230	3,564,981	1,494,407	61,224,327	

○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7,946,808천원이 증가한 993,267,159천원이 확인되었다.

라. 물품

-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
		취득	처분	
수 량	1,227	71	1	1,297
금 액	10,089,195	297,948	9,390	10,377,753

-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288,558천원이 증가한 10,377,753천원이 확인되었다.

Ⅲ.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1. 지방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철저
2. 예산전용·이체사용 방법 개선 권고
3.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관리 만전
4. 세수별 부진 세입 확충 방안 강구
5. 지방세(세외수입 등)정리보류 과다 집행
6.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관리 소홀
7. 완도군 금고 관리 소홀
8. 예비비 사용 집행 철저
9. 어업(농가)활동 지우너사업 효율적 추진 방안 강구
10.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류 작성 철저
11. 세출예산 사고이월 관리 철저
12.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13.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철저
14.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예산 관리 부적정
15. 지방보조금 시스템(보탬e) 보조금결산자료 기재 철저
16.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예산 반환 부적정
17.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오류
18. 계정과목 분류 오류
19.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작성 오류
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보고서 작성 오류
21.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기반 조성(우수사례)

① 지방기금의 효율적 운영 · 관리 철저

(소관부서 : 관광과, 안전총괄과, 환경수질과, 기획예산실, 세무회계과, 행정지원과)

□ 현황

【표1】 기금설치 운용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23년도 말 현재액	24년도 기금 운용계획		24년도 말 현재액	증감
		수입	지출		
옥외광고 정비기금	113,249	197,484	99,810	210,924	97,675
식품진흥기금	104,925	16,610	9,500	111,435	6,510
재난관리기금	1,382,199	342,487	121,494	1,603,192	220,99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19,868,233	566,141	-	20,434,375	566,14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6,199,395	5,495,948	-	11,695,344	5,495,949
청사신축기금	8,588,590	408,393	-	8,996,964	408,374
고향사랑기금	519,007	907,32	41,669	1,385,079	866,072

□ 지적사항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유 운용하는 특수자금으로서 소요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그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옥외 광고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의 수입은 소액의 예치금 이자와 기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조성이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당해기금 목적 사업이 계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 고향사랑기금은 사업발굴 및 홍보 미흡
- 기금 관련 조례에서 정한 의무(법정)출연금 미확보

□ 개선·권고사항

- 일부 기금은 장기간 기금 운용이 비효율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고유 목적 사업의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순수한 자체수입이 열악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체계를 단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기금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람.

□ 조치계획

<< 세무회계과 >>

-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조성) 제2항에 의거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확보하도록 예산팀과 사전협의 및 본예산에 편성 요구 조치 예정

<< 기획예산실 >>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특히, 이자수입·전입금 등 외에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도록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일부 기금은 적극적 사업비 편성 노력이 부족하고 적립성 기금으로만 활용하고 있어 기금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다소 소극적인 운용을 하고 있음.
- 향후, 기금별 사업비 반영을 적극 유도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타회계 예수·예탁 또는 전출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는 등 기금총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환경수질관리과 >>

-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여유자금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비효율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안전총괄과 >>

-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전입금 및 의무예치금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행정지원과 >>

○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및 홍보 철저

- 전년대비 '25년은 신규 기금사업 발굴 등 기금 특성에 맞는 목적사업 추진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4년 고향사랑기금 집행액 : 41,659천원

- 현재 추진 중인 기금사업 언론 및 SNS, 이장회보 등 홍보 강화

※ '25년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업명	예산액(천원)
합계		318,600
일반기부 사업	육아맘, '해(海)캅스' 치유의 달 운영	30,000
	청산면, 마을공동빨래방 운영비 지원	3,600
	노화읍 마을공동빨래방 조성 사업	30,000
지정기부 사업	완도군BC 유소년야구단 육성 지원	40,000
기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답례품비 ('25년부터 고향사랑기금에서 지급)	215,000

<< 관광과 >>

-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 정기예치 공공이자 수입으로 조성함
-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2023년까지 1억 이상을 조성하여 2024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활용함
- 2024년 1천만원 본예산 편성하여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손님용 앞치마를 구입하여 일반음식점에 배부하였고, 2025년에는 2천만원을 편성하여 앞치마를 구입하여 배부할 예정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여 위생적인 식문화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구입 및 시설개선사업 지원 등 추진하고 있음

2 예산전용·이체사용 방법 개선 권고

(소관부서 : 전 부서)

□ 현황

○ 예산의 변경은 전용과 이체사용이 있으며, 동일 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상호용통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따라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구 분	세 출 과 목			승인권자
	조 직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예 산 이 용	×	○	○	지방의회
예 산 전 용	×	×	○	지방자치단체장
예산이체사용	○	○	○	

○ 최근 3년간 전용·이체 사용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22		2023		202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예 산 이 용	-	-	-	-	-	-
예 산 전 용	60	925,861	183	11,486,538	45	998,255
예산이체사용	667	211,636,413	19	7,727,8523	-	-

○ 위 표와 같이 23년 대비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건수 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 전용·이체사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함.

○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전용·이체사용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조직개편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 예산성립 후 전용·이체사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함.

※ 24년 예산 변경 사용은 79건, 금액 4,347,809천원 / 증액4,347,809천원임.

□ 조치계획

<< 인구일자리정책실 >>

-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함으로서 불필요한 전용·이체 사용을 줄일 것이며, 불가피하게 전용·이체사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증·감 조정 후 집행하도록 하겠음

<< 건설과 >>

- '24년 건설과 예산변경 사용은 1건으로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총당을 위해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를 농어촌 취약지역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함
- 앞으로 예산편성 시 필요한 사업을 미리 검토하여 반영하고, 계획된 용도에 맞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문화예술과 >>

-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사업규모, 사업수행 가능 여부, 집행 시기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계획된 용도에 맞게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겠음
- 예산전용·이체사용은 최대한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경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수산경영과 >>

- 예산 편성시,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자 사전 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가 전용되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③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관리 만전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현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일반 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2024년도 대부료 징수현황

(단위:건, 천원)

구	분	수	량	징 수 금 액	구	분	수	량	징 수 금 액
계		430		83,262					
완도읍		100		15,457	약산면		92		11,287
금일읍		35		17,097	청산면		9		5,798
노화읍		44		2,910	소안면		16		1,222
군외면		25		3,451	금당면		7		773
신지면		32		4,866	보길면		8		1,496
고금면		52		18,090	생일면		10		815

□ 2024년도 대부료 미징수 현황

(단위:원)

연	번	구	분	부	과	대	상	자	미	징	수	금	액	비	고
		계		1	0	건			1,661,210						
1		금일읍		신	*	*			3,660						
2		노화읍		김	*	*			107,300						
3		군외면		고	*	*	*	*	125,480						
4		군외면		고	*	*	*	*	187,200						
5		군외면		김	*	*			267,160						
6		군외면		김	*	*			342,850						
7		군외면		김	*	*			254,860						
8		군외면		김	*	*			550,750						
9		군외면		서	*	*			23,710						
10		보길면		김	*	*			221,880						

□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호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나 미징수된 10건(1,661,210원)에 대하여 납부를 독려하기 바람,
- 징수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 결손처분, 동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대부계약의 해지. 해제' 등 대응책 마련 바람

제32조(대부료) ②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해제)

6. 제3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조치계획

<< 세무회계과 >>

- 미징수된 10건/1,661천원에 대하여 성실한 납부자로서 의무를 이행토록 독려하고, 징수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 결손처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거 대부계약 해지 조치 예정

[4] 세수별 부진 세입 확충 방안 강구

(소관부서 : 전 부서)

□ 현황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비고
			전년대비	전년대비	
계	889,014	872,848	98.2	854,015	97.84
자 체 수 입	57,686	50,136	86.9	52,980	105.67
지 방 세	26,979	26,376	99.6	26,229	99.44
세외수입	31,206	23,760	76.1	26,751	112.59
이 전 수 입	666,724	591,104	88.7	591,329	100.04
지방교부세	389,774	309,447	79.4	294,322	95.11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6,728	13,965	83.5	15,952	114.24
보 조 금	260,223	267,692	102.9	281,051	104.99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	164,604	231,608	140.7	209,704	90.54

□ 문제점

- 2024년 지방교부세는 95.11%는 그 전년도 2023년 79.44%대비 상승했던 것으로 보이나 2022년도(146.8%증)대비 2023년도에 큰폭으로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2개년 동안 중앙정부의 내국세 세수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의 경우 전년도 대비 90.54%로 2023년 전년도 대비 140.71% 로 큰폭으로 감소되어 세수 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세수확보가 미진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2023년 대비 세입감소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수별 연도별로 세입이 그 전년도(2022년, 2023년) 대비 감소되어 기준재정 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 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발굴 및 체납세금 징수철저로 자체자원 확보

□ 조치계획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 (추진 시기: 즉시 시행 및 연중 지속, 담당 부서: 세무회계과)
 - 신규 세원 발굴: 빅데이터, 과세자료 연계 분석 등 활용 잠재 세원 발굴 시스템 구축
 - 비과세·감면 조항 정기 재검토 및 실효성 낮은 항목 정비
 - 체납액 징수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 체납처분 시행
 - 소액 체납액 일소 위한 분할납부 유도, 책임징수제 등 다양한 징수 기법 활용
 - 정리보류 체납액 주기적 재산 재조사 및 징수 가능성 재검토
- 세외수입 증대 및 관리 강화 (추진 시기: 즉시 시행 및 연중 지속, 담당 부서: 세무회계과, 각 사업부서)
 - 신규 수입원 발굴: 공공시설물 이용 활성화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 방안 강구
 - 유희 공유재산 적극 발굴 후 매각 또는 임대 추진
 -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 수익 창출 가능성 검토 및 민간투자 유치 노력
 - 수수료 현실화 및 관리: 물가상승률, 원가 등 고려, 각종 수수료·사용료 주기적 현실화 검토
 -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강화 및 징수율 제고
- 세수 변동 상황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강화 (추진 시기: 연중 지속, 담당 부서: 세무회계과)
 - 정기적 세수 실적 분석 및 연말 세수 예측 정확도 향상
 - 국내외 경제 동향, 정부 정책 변화 등의 지방세수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 전 부서 세수 확보 노력 독려 및 세수 증대 기여 부서·직원 인센티브 방안 검토

<< 인구일자리정책실 >>

-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가 되는 우리 실 소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세입 확보에 노력하겠음

<< 해양치유담당관 >>

- 각 세수의 특성과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 마련하여 부진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행정지원과 >>

- 세외수입 1건(2,500,000원) - 납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류 및 납부독려 실시 등 징수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겠음
- 전체 본세 8,500,000 중 '18년 ~ 현재까지 1백만원씩 6회 납부 ('20. 3. 27. / '20. 4. 27. / '20. 6. 25. / '21. 4. 6./ '23. 6. 22./ '24. 6. 26.)

<< 주민복지과 >>

- 세외수입 - 납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류 및 납부독려 실시 등 징수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겠음

<< 문화예술과 >>

- 문화예술과 소관 고정적 세외수입인 각종 대관료, 대부료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 전 명확하게 안내하여 자체 자원 확보에 노력하겠음

<< 체육진흥과 >>

- 세외수입 - 체육시설이용 시 조례에 규정된 수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반환금 등에 대한 세외수입 납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 하겠음.

<< 농업축산과 >>

- 각종 세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시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부과된 세입에 대해서도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해양정책과 >>

- 체납세금에 대한 꾸준한 재산 조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회수액은 독촉·압류 등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변동 여부를 파악하여 체납세금 징수철저하여 자체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음
- 회수가 어려운 미회수액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거 결손처분 실시

<< 수산경영과 >>

- 분할납부 유도를 통하여 징수율을 증대하겠으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보유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지역개발과 >>

- 체납징수 관련하여 세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징수활동 역량을 제고하며, 세입편성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음.

<< 건설과 >>

- 건설과 소관 고정적 자체수입(세외수입)인 각종 과태료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 전 명확한 안내, 납세자 정보 최신화 및 압류 등의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자체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음

5 지방세(세외수입 등) 정리보류 과다 집행

(소관부서 : 전 부서)

□ 현황

<2024년(과년도 포함) 정리보류액 현황>

(단위/천원)

구분	정리보류액	사 유 별						
		배분금 액부족	체납처 분중지	소멸시 효완성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법 에의한 면제	기타
총계	1,150,405	17,981	26,476	17,221	206,708	852,619	1,793	27,607
지방세	276,435	91	190	14,441	190,288	71,369	56	
세외수입	873,970	17,890	26,286	2,780	16,420	781,250	1,737	27,607

□ 문제점

-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1항,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거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등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정리보류를 할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2024년(과년도 포함) 정리 보류액 지방세 276,435천원, 세외수입 873,970천원 총 합계 1,150,405천원을 사유별로 분석 하여 과다 정리 보류 처분 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징수법 제10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리 보류 한후 다른 재산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정리 보류 체납자의 재산을 수시로 파악하여 체납처분 조치.
- 체납액 정리보류시 관련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정리보류 처분 필요.

□ 조치계획

<< 해양치유담당관 >>

-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음.

<< 세무회계과 >>

- 정리보류자 재산변동사항 주기적 확인 및 즉시 체납처분
 - 정리보류자 채권(국세환급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조회
 - 정리보류자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추심요청
- 체납액 정리보류 결정 기준 강화 및 절차 개선
 - 정리보류 시 주민등록주소지 조사여부, 재산조회여부 등 강화
- 정리보류 현황 정기적 분석 및 관리 강화
 -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정리보류대상자 확인 및 추심
-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 주기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및 교육

<< 민원봉사과 >>

- 지방세, 세외수입을 정리 보류하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리 보류 체납자의 재산을 수시로 파악하여 체납처분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농업축산과 >>

- 체납자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정리 보류를 최소화하겠음.
- 정리보류 후에도 수시로 체납 징수 활동 실시하고, 압류 처분 등 추진하겠음

<< 경제교통과 >>

- 체납자의 정보 최신화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정리보류를 최소화 하겠음.
- 정리보류 후에도 수시로 자동차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징수 활동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예금 압류 처분 추진하겠음

<< 건설과 >>

-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추진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로 세수 확충에 기여하겠음
- 주소불명 및 납부 연락 회피가 납부 지연 사유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체납액 책임 징수반 편성, 신규 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해 납세자 정보 최신화를 통한 관리, 체납액 재산압류·공매 실시, 무재산 등 징수 불능분 정리보류 처분 확행 등 강력한 체납 방지책을 시행하겠음

[6]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금 관리 소홀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 ('24. 12. 31.기준)

(단위: 원)

종류별 구분	합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비고
예치금	5,750,705,505	782,172,477	1,813,736,774	3,154,796,254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단위: 건/원)

종류별 구분	합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비고
2023년	562건 / 607,691,533	451건 / 308,368,445	8건 / 30,892,550	103건 / 268,430,538	
2024년	706건 / 1,153,008,321	566건 / 376,496,055	11건 / 156,708,130	129건 / 619,804,136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성을 요구 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동법 제64조 제1항에 세입 세출외 현금 소관부서에서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외현금이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 706건 1,153,008,321원을 완도군 금고에 귀속시키고 세입 편성 하여야 함에도 2024년 12월 31일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하고 있음
- 2023년 결산검사에도 동일건으로 562건 607,691,533원이 지적된 예치금 귀속여부를 확인 조치토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건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 하시고 2024년 귀속금액이 조속한 시일내 완도군 금고에 이체되어 세입 편성될 수 있도록 이행하고 매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 함.

□ 조치계획

<<세무회계과>>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금 세입 귀속 추진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전수 조사 후 계속보관대상 제외 하고 세입귀속 조치 하겠음
 - 또한 추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수납건에 대하여 분기별로 세입귀속 조치 하겠음

7 **완도군 금고 관리 소홀**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완도군 금고 지정 현황

- 금고지정 : NH농협은행 완도군 지부
- 자금관리 :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 기금 관리 : 목적 및 특성별로 별도 은행 지정 관리 가능
- 약정기간 : 2021. 1. 1 - 2024. 12. 3

□ 회계별 자금 관리 현황 : 불임(2024. 12. 31기준)

□ 근 거

- 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3조 제3항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체,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고 있음.
- '완도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6조(세입금 관리) 및 완도군 세입금 수납대행 약정서 제6조(수납처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납한 세입금은 수납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해당계좌에 세입조치하고, 세입금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세입금을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완도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19조(인감비치 및 인감계 제출) 계약 상대자는 금고업무에 필요한 금고인과 수납(출납)인을 비치하고 금고인 및 수납(출납)인과 취급자 인감계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납(출납)인 및 취급자의 변경시에도 같다.' 라고 규정.

□ 지적사항

- '완도군에서는 2023. 1. 1부터 2023. 12. 31 기간동안 수납된 2023년 세입금에 대하여 2024년 금고검사를 실시한 결과 5일이 지난후에 세입계좌에 이체된 2건과 직접 수납한 세입금 5건을 2일이 지난 후 세입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있음.
- 또한 2023년 수납대행점 취급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취급자의 인감계를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도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 완도군 금고 검사시 수납 일계를 면밀히 검사하고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2024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서 자료에 완도군 금고 관련 자료 누락

□ 조치계획

<< 세무회계과 >>

- 「지방회계법」 제40조(금고에 대한 검사) 및 「완도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23조(금고검사)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금고 운영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 상대자가 보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사항과 장부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완도군 금고 검사 시 수납 일계를 면밀히 검사하고, 필요시 수시로 검사하여 세입금이 지연처리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회계별 자금현황(2024. 12. 31.)기준

(단위 : 원)

회계구분	예금종류	금액	비고
일반회계	정기예금	140,000,000,000	
	공금예금	11,175,900,690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금예금	116,175,810	
농공단지특별회계	공금예금	152,708,990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금예금	2,124,969,022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공금예금	46,540	
의료보호특별회계	공금예금	59,656,310	
세입세출외현금	공금예금	4,424,673,792	
환경개선부담금	공금예금	15,181,040	
옥외광고발전기금	정기예금	81,615,920	
	보통예금	129,308,189	
재정안정화기금	정기예금	11,695,344,360	
	보통예금	980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938,662,790	
	보통예금	664,529,944	
고향사랑기금(적립)	보통예금	65,972,700	
고향사랑기금(운용)	공금예금	171,476,210	
고향사랑기금	정기예금	750,000,000	
식품진흥기금	정기예금	88,132,982	
	공금예금	23,302,890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정기예금	20,432,973,993	
	보통예금	1,401,23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보통예금	147,540	
청사신축기금	보통예금	384,000	
자활기금(적립)	보통예금	2,198,636	
자활기금(운용)	보통예금	-	
합 계		193,114,764,558	

8 예비비 사용 집행 철저

(소관부서 : 기획예산실)

□ 현 황

(단위 : 원)

실 과	통 계 목	사 업 명	예 산	지 출 액	지출일자
수산경영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수산물 마케팅 판촉활동	200,000,000	200,000,000	2024.11.27
산림휴양과	사무관리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0,000,000	10,000,000	2024.12.26

※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 : 1,615,615,000원

(1,439,019,000원 지출결정 /1,291,755,384원 지출/145,499,390원 이월/ 1,764,226 집행 잔액)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법 제3조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에 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예비비에 계상할 수 없음.

□ 문제점

-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1,439,01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7건 1,291,755,384원을 지출 하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건 210,000,000원은 통계목이 이민간경상사업보조, 사무관리비로 확보하여 지출 하였음.
- 수산 경영과 유통 판매망 활성화사업(민간경상 사업보조)과 산림 휴양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무관리비)사업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 집행.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사용 제한 예산이 예비비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람.

□ 조치계획

<< 기획예산실 >>

- 2024년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수산경영과 수산물 마케팅 판촉활동(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예산은 전라남도 예비비 편성 요청에 따른 군비부담분 예산으로서, 적조 및 고수온에 따른 전복 피해어가에 대한 수산물 마케팅 판촉지원 보조금임

- 따라서, 자연재난에 기인한 예산편성으로 판단해 전라남도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분으로 편성해 지원하였으며, 상위기관(전라남도)의 장(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으로 긴급재난대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편성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간주돼 편성하였음

-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예비비 지원은 자연재난에 대한 사항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선충병을 초기에 시급히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추경예산 편성 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예비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편성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모두 완도군의회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음

- 향후, 예비비에 대한 편성기준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9 어업(농가)활동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방안 강구

(소관부서 : 해양정책과, 농업축산과)

□ 현 황

(단위 : 천원)

실 과	사업명	건 수	예산액	지출액	반납액
해양정책과	어업활동지원	36건	124,800	124,800	-
농업축산과	농가활동지원	1건	5,760	4,480	1,280

□ 근 거

- 수산업·어촌 발전법 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제1항.

□ 지원대상

- 가. 해양정책과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나. 농업축산과 :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농업인.

□ 분 석

- 해양정책과 어업활동 지원사업과 농업축산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액124,800천원으로 36건의 124,800천원을 2024년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고 하반기 사업은 예산소진으로 인하여 사업중지되어 대상자들은 있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 초래. 농업축산과 에서는 1건의 4,480천원을 지원하고 1,280천원을 반납 하였음.

- 해양정책과와 농업축산과 지원대상 비교 분석 결과 해양정책과 지원 대상은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광범위하게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축산과 농가 도우미 사업은 단순히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농·어가 활동지원 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되어 농·어가가 혜택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람.

□ 조치계획

<< 해양정책과 >>

-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실 과	사업명	건 수	예산액	지출액	반납액
해양정책과	어업활동지원	36건	124,800	124,800	-

-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과 규모, 집행시기,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추진
- 지속적인 예산 증액 요구

<< 농업축산과 >>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추진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 으로 한정되어있음.
- 지원범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로 건의하도록 하겠음.

10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작성 철저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현 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제1항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을 명백히 밝혀야 함.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총괄)

(단위 : 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비 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831,688,403,570	672,416,700,050	121,698,658,686	29,605,749,838	9,020,874,147	83,072,034,701	12,156,669,445	25,334,956,319	

□ 문 제 점

- 결산서의 작성산식에 따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감한 금액이어야 함.
- e호조 시스템과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보조금 반납금을 주무부서의 정산자료를 확인하여 입력하지 않고 결산부서 임의로 입력하여 집행잔액란에 오류가 발생하였음.

○ 보조금 반납금을 임의로 입력한 과목조서

(단위 :원)

부서명	과목	예산현액 ㉔	지출액 ㉕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㉖	집행잔액 ㉗=㉔-㉕-㉖-㉘	비고
				계 ㉘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25건		6,477,992,000	6,272,952,566	54,062,000	54,062,000			2,441,860,345	△2,301,870,911	
인구일자리 정책실	평생학습 도시조성	155,400,000	135,593,400					28,000,000	△8,193,400	
행정지원과	청정전남 으뜸마을추진	735,000,000	720,363,294					41,493,506	△26,856,800	
민원봉사과	청년전세보증금 변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6,000,000						7,800,000	△1,800,000	
주민복지과	주간활동지원 서비스지원	165,520,000	159,688,000					58,065,000	△52,233,000	
주민복지과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59,012,000	59,012,000					△5,150,000	△838,000	
가족행복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인건비 지원	991,909,000	979,879,970					15,338,470	△3,309,440	
문화예술과	도지정문화유산 보존관리	67,355,000	33,936,640	31,537,000	31,537,000			95,751,000	△98,869,640	
체육진흥과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개최지원	50,000,000	46,200,280					4,763,160	△963,440	

농업축산과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	11,874,000	5,720,400					28,277,200	△22,123,600	
농업축산과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16,186,000	105,618,072					29,106,320	△18,538,392	
농업축산과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213,750,000	213,740,000					13,656,000	△13,646,000	
농업축산과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원	83,133,000	81,444,320					1,799,680	△111,000	
농업축산과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19,000,000	16,678,830					9,089,230	△6,768,060	
농업축산과	농업 재해 대책 지원	2,500,000	750,000					19,226,000	△17,476,000	
농업축산과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17,500,000	17,485,890					6,282,822	△6,268,712	
수산경영과	어선어업 경영 안정 지원사업	71,600,000	33,518,000					1,065,850,000	△1,027,768,000	
수산경영과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	168,000,000	162,000,000					55,800,000	△49,800,000	
산림휴양과	정책숲가꾸기	1,570,806,000	1,570,399,720					915,747	△509,467	
산림휴양과	가로경관조성 (자체)	1,065,197,000	1,062,049,170					40,000,000	△36,852,170	

지역개발과	소 규 모 지 역 개 발 (주 민 속 원)	400,000,000	397,150,000					22,850,000	△20,000,000	
건설과	지 방 하 천 유지관리사업 (도 비)	142,525,000	118,849,230	22,525,000	22,525,000			493,281,810	△492,131,040	
안전총괄과	재 난 대 응 안전한국훈련	16,200,000	15,756,400					21,000,000	△20,556,400	
안전총괄과	안 전 보 안 관 운 영 지 원	4,040,000						379,512,000	△375,472,000	
안전총괄과	재난복구지원	343,885,000	335,526,950					9,000,000	△641,950	
기술담당관	농 촌 지 도 자 양 성 교 육	1,600,000	1,592,000					152,400	△144,400	

□ 개선 및 권고사항

- e호조 시스템과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보조금 반납금 기재란에 정산자료를 정확히 입력하여 작성산식 및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결산서가 작성되도록 각 주무부서에서는 주의를 다할 필요가 있음.

□ 조치계획

<< 세무회계과 >>

-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정산자료를 정확히 입력하여 작성산식 및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매뉴얼 숙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스템 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 담당자들에 대한 보탬e시스템 활용 교육과 매뉴얼 숙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결산서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와 함께 만전을 기하겠음.

11 세출예산 사고이월 관리 철저

(소관부서 : 전 부서)

□ 현 황

- 지방 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2024년도 사고이월 명세서(총괄)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사 고 이월액	비 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37건)				57,116,461,318	48,931,979,211	36,226,787,530	9,020,874,147	

□ 문 제 점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중 사고이월제도의 특성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37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고이월액을 확정하면서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사업 등 4건에 대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액을 포함하여 사고이월액을 확정하였음.

《지출원인행위액을 초과한 사고이월액 확정 조서》

(단위: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사 고 이월액	비 고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계목					
해양치유 담당관	해양수산 어촌	해양치유기획관리	전산 개발비	600,000,000	599,000,000	385,600,000	214,400,000 213,400,000	이월확정액 이월가능액
행정 지원과	일반행정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발굴및실증	시설비	746,000,000	745,714,460	543,711,680	202,288,320 202,002,780	이월확정액 이월가능액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	생활문화센터조성 (신지면 전환사업)	시설비	1,407,129,000	1,401,576,090	1,380,896,090	22,000,000 20,680,000	이월확정액 이월가능액
산림 휴양과	임업산촌	치유의숲운영 (자체)	시설비	160,000,000	151,864,440	100,938,710	51,709,440 50,925,730	이월확정액 이월가능액

※ 이월가능액 = 지출원인액 - 지출액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형공사, 재난복구 사업,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및 보상비 등을 제외한 경비는 회계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고이월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를 근거로 지출원인행위액과 상관없이 사고이월액을 확정하는 것은 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임.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제도를 활용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해석 및 근거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여 세출예산 이월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조치계획

<< 인구일자리정책실 >>

-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최대한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음

<< 행정지원과 >>

-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독으로 예산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추진하겠음

<< 가족행복과 >>

- 사업진행 중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해결하여 연도 내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독으로 예산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추진하겠음

<< 문화예술과 >>

- 신지면 생활문화센터 다목적회의실 LED디스플레이 설치 공사 1건에 대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액(금1,320,000원)을 포함하여 사고이월액을 확정하였음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제도를 활용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해석 및 근거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여 세출예산 이월제도를 활용하겠음

<< 농업축산과 >>

- 이월근거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여 세출예산 이월제도를 활용하겠음
- 사고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 및 점검하도록 하겠음

<< 해양정책과 >>

- 사고이월의 취지에 맞게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 후 그 범위 내에서 사고이월액을 확정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경제교통과 >>

-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 일정과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음

<< 환경수질관리과 >>

-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미리 추진하는 등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음.
- 사고이월을 추진할 때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지역개발과 >>

- 사업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정확한 예산 산정을 통해 예산 과다 또는 부족을 방지하고,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겠음

12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소관부서 : 기획예산실)

□ 현 황

- 완도군은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라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4개), 정책사업목표(114개)를 설정하여 성과목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재정을 운영하였음.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실 국 명	성 과 계 획				예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 책 사 업 목 표		단 위 사업수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개 수	지표수				
계	4	114	231	220	598,496	640,681	-42,158
본 청	1	98	200	182	562,442	603,560	-41,119
직 속 기 관	1	10	24	27	22,468	23,620	-1,151
사 업 소	1	4	7	8	1,877	2,194	-316
군 의 회	1	2	2	3	1,136	1,153	-17
읍면동사무소	0	0	0	0	10,572	10,154	419

○ 2024년도 성과보고서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단위 : 개, 원)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5	115	243	14	194	35	687,937,523,351	663,799,862,122	104,526,448,003
기획예산실	1	2	7	1	5	1	9,700,028,508	4,304,619,248	5,395,409,260
인구일자리정책실	1	10	17	0	12	5	13,120,478,848	11,127,563,045	1,992,915,803
해양치유담당관	1	3	9	0	5	4	16,610,621,388	36,173,088,925	△19,524,467,537
행정지원과	1	2	7	1	6	0	40,226,837,320	38,447,966,598	1,778,870,722
세무회계과	1	3	5	0	5	0	59,924,445,840	65,417,076,320	△5,492,630,480
민원봉사과	1	4	8	1	5	2	2,714,390,986	2,585,026,560	129,364,426
주민복지과	1	10	21	0	18	3	41,363,719,215	33,493,510,505	7,870,208,710
가족행복과	1	5	10	0	10	0	103,175,386,191	93,718,664,498	9,456,721,693
경제교통과	1	7	9	0	9	0	19,809,075,565	19,520,408,740	288,666,825
관광과	1	4	8	0	8	0	12,953,397,648	11,844,115,881	1,109,281,767
문화예술과	1	5	10	1	8	1	15,949,865,455	12,593,159,512	3,356,705,943
체육진흥과	1	2	4	0	4	0	13,947,959,483	11,921,079,810	2,026,879,673
농업축산과	1	3	10	0	6	4	38,369,275,622	33,511,519,490	4,857,756,132
해양정책과	1	8	24	4	15	5	33,564,701,477	24,892,726,387	8,671,975,090
수산경영과	1	4	9	2	5	2	43,614,637,947	39,451,037,360	4,163,600,587
산림휴양과	1	5	8	0	7	1	24,119,353,910	20,408,634,210	3,710,719,700
환경수질관리과	1	7	14	0	14	0	68,814,125,231	62,853,782,487	5,960,342,744
지역개발과	1	3	9	0	9	0	62,218,218,570	74,957,824,250	△12,739,605,680
건설과	1	7	11	0	11	0	36,839,538,870	34,123,504,550	2,716,034,320
안전총괄과	1	5	11	0	11	0	4,472,706,458	5,677,126,230	△1,204,419,772
기술담당관	1	6	13	0	11	2	7,416,315,126	7,889,977,029	△473,661,903
보건행정과	1	2	4	2	1	1	9,170,226,490	8,415,635,640	754,590,850
건강증진과	1	2	7	1	5	1	6,667,472,520	6,961,686,570	△294,214,050
시설관리사업소	1	4	6	1	2	3	2,008,115,753	2,435,509,718	△427,393,965
의회사무과	1	2	2	0	2	0	1,166,628,930	1,074,618,559	92,010,371

□ 문 제 점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나 성과계획서(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목표 114개)와 성과보고서(전략목표 25개, 정책사업목표 115개)의 목표치가 상이함.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는 성과보고서 작성대상 기관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사무소까지 작성되었음.
- 성과계획서 작성시 성과계획 목표체계와 예산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나 본 예산 확정, 추경으로 예산체계가 변경되었으나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을 수정하여 작성하지 않았음.
- 성과지표 목표치가 미달성 및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 성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기재내용이 없음.
-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기재하여 하나 기재내용 없음.

《2023년 성과보고서 개선사항》

-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기간별 연속성을 유지할 것
- 달성이 100% 보장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말 것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
- 유효한 성과측정이 가능한 측정산식을 개발할 것
- 초과달성 및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충실하게 할 것
- 지난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할 것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계획서 작성시 단순히 과거 실적이나 전임자의 업무를 답습하여 이를 근거로 향후 달성도를 의식한 보수적인 목표치 설정을 지향하고 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업무추진방식의 개선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성과지표 목표치가 미달성 및 초과 달성된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직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다음연도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군도 및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의 측정산식을 실시설계 실적으로 목표치 달성률을 산출하기보다는 중장기 계획 대비 도로개선 실적을 산식에 반영하여 교통환경개선 등 사업의 최종적인 추진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토록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조치계획

<< 기획예산실 >>

- 성과예산 작성대상 및 성과계획서·보고서 목표치 검증
 - 결산 통합기준에 의거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인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 작성 대상 누락방지 및 읍·면 등 비대상 기관 제외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간 목표치 일치 여부 등 성과예산 분석을 위한 기본사항 검증

-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의 적합성 및 실효성 개선
 - 과거실적 및 전임자 작성내용 답습 방지 및 사업추진 간 문제점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지표 설정
 - 사업 최종목적 달성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표 설정으로 실적 및 성과 체계적 관리

- 사업별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
 - 성과지표상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시, 원인 분석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 및 해당 내용 성과보고서 내 포함 작성

- 결산감사간 개선사항 성과보고서 내 반영
 - 직전연도 결산검사 결과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 마련 및 차년도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시 해당 내용 반영

13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철저

(소관부서 : 전 부서)

□ 현 황

-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 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임.
- 보조금 사업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가내시(안)을 근거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 본예산에 편성하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편성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함.

□ 문 제 점

- 보조금 가내시(안)을 근거로 2024년 본 예산에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2024. 2. 16일 보조금 확정내시가 통보되었으나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안 변경 편성요구를 하지 않고 보조금 전액을 불용 처리함.
-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미반영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가내시액	확정내시액	예산편성액	비 고
합 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지원 (민원봉사과)	6,000	12,000	6,000	
국 비		3,000	6,000	3,000	
도 비		900	1,800	900	
군 비		2,100	4,200	2,100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액보다 보조금 반납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의 예산업무 연찬 및 담당 팀장의 지도편달이 필요함.

□ 조치계획

<< 인구일자리정책실 >>

- 보조금 가내시를 근거로 본예산에 편성했던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통해 확정내시액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당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완료 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음.

<< 행정지원과 >>

- 사업 추진시 충분한 사점 검토 등 행정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음

<< 세무회계과 >>

- 본예산에 편성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통보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 민원봉사과 >>

- 가내시안을 근거로 본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확정내시 통보가 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변경 편성요구를 누락없이 진행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문화예술과 >>

-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음
- 사업의 우선순위, 추진 일정, 자원 확보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예산 낭비와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특히 보조금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보조금 가내시(안), 보조금 확정내시를 정확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겠음

<< 농업축산과 >>

- 국도비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된 사항을 추경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예산액보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해양정책과 >>

- 예산액보다 보조금 반납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충분한 사업 검토를 통해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 수산경영과 >>

- 예산 편성시,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선정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또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시 미편성하여 불용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 환경수질관리과 >>

- 보조금 사업의 가내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요구하겠음.

14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예산 관리 부적정

(소관부서 : 경제교통과, 수산경영과)

□ 현 황

<보조사업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 잔액	
완도사랑 상품권운영	계	6,300	6,094	3,566	-	2,528
	국비	2,305	2,341	1,783	-	558
	시·도비	359	117	-	-	117
	시군구비	3,636	3,636	1,783	-	1,853
조건불리 지역수산물 직불제	계	2,163	2,220	433	891	1,787
	국비	1,730	1,730	346	616	1,384
	시·도비	87	143	17	14	126
	시군구비	346	346	69	261	277

□ 지적사항

- 완도사랑 상품권외1종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84억6천3백만원중보조금 수령액 83억1천4백만원중 39억9천9백만원을 집행하고 43억1천5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함은 부적절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시 그 해 집행가능액을 잘 판단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하고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때는 추경을 통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바람.

□ 조치계획

<< 해양정책과 >>

- 보조사업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 잔액	
조건불리	계	2,163	2,220	433	891	1,787
지역수산물	국비	1,730	1,730	346	616	1,384
	시·도비	87	143	17	14	126
직불제	시군구비	346	346	69	261	277

- 예산편성 시 그 해 집행 가능액을 잘 판단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때는 추경을 통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불용 처리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 경제교통과 >>

- 예산 편성시 수용가능한 집행액 산정에 신중을 기하겠음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결산 및 보템e 시스템 관리하도록 하겠음

15 보조금시스템(보탬e) 보조금결산자료 기재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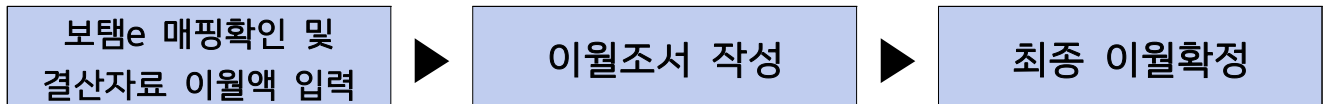
(소관부서 : 전 부서)

□ 24년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사업비 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계	이월액	이월잔액	비고
2024	1,300	800	500	

□ 추진절차



□ 문제점

- 24년도 청년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사업비 13억이 배정되어 회계연도가 바뀔에 따라 이월해야 하지만 13억 중 지방보조금 부분 5억원이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결산자료목록상에 이월액 기재가 누락되었음.
- 이로 인해 실제 예산은 이월이 되었음에도 기재가 누락되어 보조금 5억원은 결산서상에 불용처리 된 것으로 처리된 바, 향후 잉여금 집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보조금 수령 시 매핑작업을 철저히하고, 이월작업시 보탬e상에 이월액을 기재하여 향후 결산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 또한 보탬e 시스템 본격 도입기간이 최근 시작되어 사용자들의 미비한 점들을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시스템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할 것임.(기획예산실)

□ 조치계획

<< 인구일자리정책실 >>

- 지방보조금 수령 시 매핑작업을 철저히하고, 이월액 또한 보탬e 상에 철저히 기재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보탬e 사용 매뉴얼을 숙지하여 보조금 사용 시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 세무회계과 >>

- 국도비보조금이 송금되면 매핑작업 및 이월액 등의 전산처리를 정확히 하여 보조금시스템과 결산서가 일치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 문화예술과 >>

- 2024년부터 보조금 업무를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으로 처리함에 따라 직원들이 시스템 사용이 미숙하여 보조금 결산에 어려움이 있었음
-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숙지하여 보조금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농업축산과 >>

- 최근 보탬e 시스템이 도입되어 직원들의 시스템 사용법이 미숙함에 따라 보조금 결산에 어려움이 있었음.
- 매뉴얼 숙지 및 시스템 교육 참여를 통해 향후 보조금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16]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예산 반환 부적정

(소관부서 : 건강증진과)

□ 현 황

<보조사업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단위: 천원)

사 업 명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집행 잔액	이월액	현년도 반환금액
공무직 근로 자(무기계약) 보 수	계	28,740	19,644	9,095	- 10,121
	국 비	23,950	16,370	7,579	- 8,433
	시·도비	4,790	3,274	1,515	- 1,688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 험	계	2,940	2,884	56	- 56
	국 비	2,450	2,403	47	- 47
	시·도비	490	480	9	- 9

□ 지적사항

- 공무직(무기계약)보수 국·도비 보조금 31,680천원을 수령하여 22,52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9,15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나 현년도 반환금은 10,121천원으로 집행잔액과 반환액이 상이함은 부적절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모든 예산은 예산총액중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과 반납 또는 불용액이 일치해야 함. 실제 집행잔액과 보조금결산 집행잔액이일치하도록 하시기바람.

□ 조치계획

<< 건강증진과 >>

- 공무원(무기계약)보수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40,527천원,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2,940천원으로 총 43,467천원을 수령하여 총 33,28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17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10,177천원을 반환함.
- 추경 등으로 인해 예산 증감 발생 시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결산 시 예산 및 잔액 등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음.

17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오류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보고서 작성 현황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작성오류

202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22,300,868㎡ 198,217,121,698원
- 건물 417,829㎡ 379,982,917,349원
- 기타 8,703건 415,067,120,638원
- 총 993,267,159,685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류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995,320,351,255	143,842,415,988	55,895,607,558	993,267,159,685
토지	197,932,290,284	25,095,356,767	24,810,525,353	198,217,121,698
건물	299,298,815,243	111,769,184,311	31,085,082,205	379,982,917,349
입목죽	4,510,626,340			4,510,626,340
공작물	396,191,662,238	4,735,878,510		400,927,540,748
기계기구	1,660,951,620	461,316,400		2,122,268,020
선박	1,881,811,000	1,780,680,000		3,662,491,000
무체재산	609,520,330			609,520,330
유가증권	2,950,000,000			2,950,000,000
회원권	284,674,200			284,674,200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관련 계정과목 검토

○ 회원권 현황 (행정지원과)

(단위 : 원)

연번	회원권 종류	구입일자	구입금액
1	대명리조트(단양) 22평	2011-02-28	60,000,000
2	대명리조트(델피노) 32평	2011-02-28	90,000,000
3	대명리조트(단양) 32평	2012-07-06	34,600,000
4	한화리조트(속초) 23평	2012-03-06	81,000,000
6	금호리조트(설악) 27평	2012-02-29	28,000,000
7	국민증진(완도스파) 13평,22평	2012-02-24	40,000,000
계			333,600,000

○ 유가증권, 회원권 현황

재정상태표 (2024년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해당연도(2024년)	해당연도(2023년)	비 고
-종 략-	-	-	
장기투자증권	3,050,000,000	2,950,000,000	전년대비 100,000,000증가
기타투자자산(회원권)	333,600,000	333,600,000	증감 없음

○ 공유재산 기타항목 중 회원권과 유가증권에 대한 계정 과목을 검토한 결과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장기투자증권은 2024년 12월 말 현재 3,050,000,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000,000원이 증가하였음.

○ 회원권은 333,600,000원으로 전년대비 증감 없음을 확인 하였음.

□ 검사 의견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상 자산의 회계연도 말 잔액은 재무상태표상의 잔액과 일치하여야 하나 기 작성 된 보고서의 경우 전년도 유가증권 증가액이 미반영되어 있으며, 회원권의 경우 계정별 원장과 재무상태표 상 잔액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
- 작성 항목 간 상호 관련이 있는 경우 전년도 증감액 반영과 잔액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공시하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 따라서, 유가증권은 전년도 증가액 100,000,000원은 추가 반영해 주고 회원권의 경우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재무상태표 상의 잔액과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고보서 상의 잔액을 일치시켜야 할 것임.

□ 조치계획

<< 세무회계과 >>

- 증감 및 현황보고 이후 E호조를 통하여 재정 승인된 경우로, 시스템 상 유가증권 증가액 100,000,000원은 2025년 반영 예정
- 유가증권 현황

(단위 : 원)

연번	종류	회계기준가액	증감적용연도
1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	100,000,000	2025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상 결산에 반영되는 잔액은 취득가액이 아닌 회계기준가액 기준으로 재무상태표 상 잔액과 일치함

- 회원권 현황

(단위 : 원)

연번	종류	구입일자	회계기준가액 (결산반영액)
1	대명리조트(단양) 22평	2011-02-28	47,059,200
2	대명리조트(델피노) 32평	2011-02-28	70,041,600
3	대명리조트(단양) 32평	2012-07-06	27,542,400
4	한화리조트(속초) 23평	2012-03-06	74,322,000
5	금호리조트(설악) 27평	2012-02-29	25,709,000
6	국민증진(완도스파) 13평	2012-02-24	20,000,000
7	국민증진(완도스파) 22평	2012-02-24	20,000,000
계	7건		<u>284,674,200</u>

18 계정과목 분류 오류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오류 현황

무형자산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 회계	계
무체자산(공유 재산, 무체재산)	3,323,350	0	0	0	3,323,350
전산소프트웨어	1,184,042,519	2,000	0	0	1,184,044,519
건설중인 무형자산	9,898,570	0	0	0	9,898,570
계	1,197,264,439	2,000	0	0	1,197,266,439

○ 건설중인 무형자산으로 일반회계에 9,898,570원이 계상되어 있음.

□ 무형자산의 계정별원장 검토 및 의견

○ 무형자산 계정별 원장

(단위 : 원)

회계구분	회계과목	관리과목	회계 처리일자	부 서	적 요	금 액
일반회계	무형자산	건설중인 무형자산	2024.10.11	주민복지과	완도군 가족 센터 건립사 업(건축) 관 급자재계약	9,898,570

□ 검사 의견

- 무형자산은 의장권, 실용실안권,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지상권,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개발비 등으로 해당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음.
- 재무상태표 주석사항 중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타 비유동자산인 건설중인무형자산의 경우 완도군가족센터 건립사업(건축)관급자재 계약에 관련된 금액으로, 이는 무형자산이 아닌 건설중인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건물완성 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 하여야 함.
- 따라서,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을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이나 주민편의시설 등의 건설 중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19] 재무재표에 대한 주식사항 작성 오류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작성오류 1

<금융리스부채의 상환일정>

(단위 : 원)

연 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2025년	996,557,912	0	0	0	996,557,912
2026년	1,032,135,028	0	0	0	1,032,135,028
2027년	1,068,982,250	0	0	0	1,068,982,250
2028년 이후	2,842,425,081	0	0	0	2,842,425,081
계	6,902,307,388	0	0	0	6,902,307,388

○ 합계금액 오류- 6,902,307,388원을 5,940,100,262원으로 수정 작성

□ 작성오류 2

<장기투자증권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피투자회사명 또는 발행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공정가액
투자주식	전북주식회사	33	2,950,000,000	2,950,000,000	

○ 재무상태표 상의 장기투자증권 3,050,000,000원과 일치시켜야 함

○ 해양치유관리공단에 대한 출자금 현황 추가 작성해야 함

□ 검사 의견

- 재무제표의 주석 사항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하는 것임. 따라서, 주석사항은 보다 정확한 작성을 통해 완도군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완도군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조치계획

<<세무회계과>>

○ 금융리스부채의 상환일정

연 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2025년	996,557,912	0	0	0	996,557,912
2026년	1,032,135,028	0	0	0	1,032,135,028
2027년	1,068,982,250	0	0	0	1,068,982,250
2028년 이후	2,842,425,081	0	0	0	2,842,425,081
계	5,940,100,262	0	0	0	5,940,100,262

- 금융리스부채 상환일정 합계금액 단순오류로 5,940,100,262원으로 수정 작성 조치 예정

○ 장기투자증권의 세부내역

구분	피투자회사명 또는 발행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공정가액
투자주식	전복주식회사	33	2,950,000,000	2,950,000,000	
출자금	해양치유관리공단	100	100,000,000	100,000,000	

- 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금 현황 추가 반영 조치

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작성 오류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작성현황

<지방 출자 . 출연기관 현황>

(단위: 원)

구 분	설립 연도	설립 목적	근 거	주요 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 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재)장보고 장학회	2007	지역인재 육성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인재육성 장학금및 미래교육 지원사업등	14,320,000,000	14,320,000,000 0 (100%)
완도전복 주식회사	2009	산지유통 구조개선	법률 제14196호	유통,가공	8,895,000,000	2,950,000,000 0 (33.2%)
행복복지재단	2015	복지사회 구현	민법32조	복지기금 조성,취약 계층지원	6,000,000,000	5,000,000,000 0 (83.33%)
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2012	해조류 박람회 준비운영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해조류박람회준비 운영	50,000,000	50,000,000 (100%)
(주)화신산업 개발	2003	대도시권 판로개척	지방공기업 법제77조의 3,상법288조	생산어민 과의직거래대도시 판로개척	1,950,000,000	487,000,000 0 (24.3%)

○ 지방자치단체 출자현황

(단위 : 원)

구 분	출자연도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계	현 금	현 물	
				금 액	내 역
계	계	3,437,000,000	3,437,000,000	-	-
	2017 이전	3,437,000,000	3,437,000,000	-	-
	2018-2024	-	-	-	-
완도전복 주식회사	계	2,950,000,000	2,950,000,000	-	-
	2017 이전	2,950,000,000	2,950,000,000	-	-
	2018-2024	-	-	-	-
(주)화신산업 개발	계	487,000,000	487,000,000	-	-
	2017 이전	487,000,000	487,000,000	-	-
	2018-2024	-	-	-	-

□ 검사 의견

- 완도군의 2024년 회계기간 중 신규 출자 유무를 확인한 결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에 대한 출자금 100,000,000원을 확인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여 작성해서 공시해야 하나 기 작성된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따라서, 지방출자.출연기관현황에 아래 표1의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현황은 표2와 같이 수정 작성하기 바람.

○ 지방 출자 . 출연기관 현황(표1)

(단위 : 원)

구 분	설립 연도	설립목적	근 거	주요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액	지방자치단체출자액 (비율)
완도해양 치유관리 공단	2024	해양치유 산업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등	지방공기업법 제76조,완도 해양치유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해양치유관광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100,000,000	100,000,000 (100 %)

○ 지방자치단체 출자현황(표2)

(단위 : 원)

구 분	출자연도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계	현 금	현 물	
				금 액	내 역
계	계	3,537,000,000	3,537,000,000	-	-
	2017 이전	3,437,000,000	3,437,000,000	-	-
	2018-2024	100,000,000	100,000,000	-	-
완도전북 주식회사	계	2,950,000,000	2,950,000,000	-	-
	2017 이전	2,950,000,000	2,950,000,000	-	-
	2018-2024	-	-	-	-
(주)화신산업 개발	계	487,000,000	487,000,000	-	-
	2017 이전	487,000,000	487,000,000	-	-
	2018-2024	-	-	-	-
완도해양치유 관리공단	계	100,000,000	100,000,000	-	-
	2017 이전	-	-	-	-
	2018-2024	100,000,000	100,000,000	-	-

□ 조치계획

<<세무회계과>>

- 감사의견 검토 결과 수정함이 타당하여 수정완료

21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기반 조성(우수사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와 효용성을 제고함

□ 추진배경

-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활용 재산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현 황

- 사업기간: '24, 7, ~ 12.
- 사 업 비: 100백만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50, 군 50)
- 사업내용: 전문기관과 연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추진

□ 주요성과

- 새울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
 - 공적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간의 등록사항 불일치 재산 발굴(2,739건)
 - 누락재산(3,537건/46억원) 및 처분대상(1,539건) 재산발굴, 재산관리관 추적 등
- 항공사진 분석조사(행정재산) 추진
 - 도시계획 주제도를 활용한 행정목적 외 사실상 용도폐지 검토대상 및 점유 의심지, 토지개발사업 잔여지 등 현장 실태조사 대상지 발굴
- 현지 정밀조사(일반재산)추진
 - 항공영상 및 과거측량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확한 현장조사 실시

□ 기대효과

- 정확한 공유재산 데이터 구축을 통해 양질의 공유재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기여
- 숨은 재산 발굴을 통해 재정 수입 및 자산활용 효율성 증대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 가용재산 현황도 제작,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전수조사 후 일괄 매각 추진, 찾아가는 공유재산임대계약 추진 등에 활용하여 유휴재산 활용도 제고 및 군민 편익 증진